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7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2.

발 의 자 : 최은석 · 진종오 · 이양수
최보운 · 배준영 · 임이자
추경호 · 이종배 · 김기현
김성원 · 김정재 · 서일준
박상웅 · 김상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

③ ~ ⑥ (생략)	<u>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으로-----.</u> ③ ~ ⑥ (현행과 같음)
------------	--